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

## 1. 납세신고의 의의

납세신고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관청에 그 내역을 제출하는 행위이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조세채무의 확정 효과에 있으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 2. 주요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 가. 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는 그 내용에 따라 사업장 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 매매업자 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있다.

#### (1) 사업장 현황 신고

##### (가) 개념 및 신고의무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 (나) 신고기한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고할 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 등 수취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 불성실 신고 시 제재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한다. 복식기장의 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르게 기재한 경우 일정률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 (2) 종합소득세 신고

(가) 개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 등이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등을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 신고의무자

-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및 단체
- ㉡ 근로소득 등과 다른 합산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
-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 ㉤ 2인 이상으로부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⑥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국내원천소득 근로소득과 그 밖의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자로서 그 소득을 연말정산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⑦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사적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 ⑧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비거주자 및 단체.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가 적용된 근로소득의 경우에 당해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⑨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자로 종합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상 소득자
- ⑩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이 있는 경우
- ⑪ 기타소득 중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 ⑫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 선택적 신고 대상자

- ①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여 추가 신고하는 경우
- ②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의 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 ③ 연말정산 시 중도퇴직자로서 소득공제 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 (라) 신고방법에 의한 대상자 분류

①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자와

②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로 구분된다.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와 첨부이 필요 없는 자,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  
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①-1. 복식기장 의무자 중 자기조정 신고자

복식부기 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이 아닌 자로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2. 복식기장 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중 기준수입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복식부기  
의무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  
여 작성한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③ 합계  
잔액시산표 ④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한편,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  
도과-335,2017.3.27.).

①-3. 복식부기 신고자 중 조정계산서 미첨부자

기준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③ 합계잔액  
시산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복식장부 신고 대상자가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

여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감면등 적용이 배제된다(과세기준자문. 법령해석소득-0139, 2016.7.13.).

#### ①-4.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복식장부 신고 대상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자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 ②간편장부 신고자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내용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확정신고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1.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는 무신고가산세가 없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이 가능하다.

####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구분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신고자가 아닌 사업자.

해당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 계산명세가 기재되어야 한다,

한편, 매입비용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4.23.선고 2007두3107 판결)

주요경비 계산명세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기재하고 정규증빙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만 주요경비에 산입된다.

기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인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한하여 주요경비에 산입된다.

#### ○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구분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로 확정신고 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기준수입금액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단

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이 가능하다.

한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됨.

그러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은 소득금액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

### ③ 비사업자 등

기타소득 등이 있는 비사업자는 기장 또는 일괄 필요경비 산입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한다.

#### ※ 확정신고 시 제출할 기타 부속서류

사업소득에 농가부업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계산명세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는 계산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다.

(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①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1~5.31 기간 동안 신고하여야 하고,

②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1~6.30 기간 동안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신고

당해 연도 11.1~11.30 기간 동안 신고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

⑤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한다.

**(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부동산매매업자 소득세 신고

##### (가) 의의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비주거용 건물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란 직접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하는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부동산 매매업이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 (나)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의 구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 (다) 소득세 신고기간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라) 소득금액 계산방법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한편 조정지역 등의 부동산에 대한 산출세액 산정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비교과세하여 큰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가) 개요

양도소득세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가치의 증가분을 일시에 과세하는 세금임을 감안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자금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법원 2011.9.29.선고, 2009두 22850 판결)

### (나)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자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외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예정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 (다) 예정신고 납부기한

#### ① 일반적인 양도인 경우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해제 시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대주주 주식,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⑤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특정주식의 양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파생상품은 예정신고의무가 없다.

(라) 신고 시 제출할 서류

①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신고서와 해당 자산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③필요경비에 관한 증빙 서류, ④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가) 확정신고 의무자

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예정신고를 한 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 이에 해당하는 자로는 연간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③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할 경우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④ 코스피200,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⑤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파생상품 등이다.

(나) 확정신고 납부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경우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한이 된다.

(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추가신고 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 행정소송으로 인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수용보상가액의 변동에 의한 양도소득 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한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마)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해 자산의 매입·매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증빙자료, 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양도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비교과세

동일한 과세기간 중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

면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양도세 세율 적용 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 나. 부가가치세 신고

###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거두어 들이는 중간 예납 성격이 강하다.

#### (가) 예정신고 기간 및 신고기한

제1기 1.1.~3.31. 제2기 7.1~9.30.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예정신고 대상자

①일정한 법인사업자, ②개인사업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③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한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예정부과기간)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징수한다.

※ 한편, 2021.1.1. 이후부터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의 영세 법인 사업자도 예정고지를 한다.

##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가) 확정신고 기간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 (나) 확정신고 기한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제출서류

신고서 제출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그 밖에 부동산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

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 **(가) 조기환급 취지**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제도가 조기환급이고 이를 신고하는 것이 조기 환급신고이다.

(나) 조기환급기간 : 예정신고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다) 조기환급신고기한: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 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4) 전자적 용역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국내개발자는 국내오픈마켓 또는 해외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개발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내오픈마켓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오픈마켓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해외오픈마켓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외오픈마켓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 개별소비세 신고

### (1) 일반적인 경우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사용·수익하는 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등은 과세물품을 반출 등을 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2) 기타 개별소비세 신고의무

유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자는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말일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라. 법인세 신고

###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가) 의의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 기간 중 별도로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액의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 (나) 중간예납 대상 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성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법인세가 전액 면

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산출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중소기업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 (다) 중간예납세액 산출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①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②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라) 신고 시 첨부서류

①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②중간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 (마) 신고납부기한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가 1.1~12.31인 경우의 중간예납기간은 1.1~6.30)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2) 법인세 신고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 (가) 신고기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금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나) 신고 시 첨부서류

-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 세무조정계산서
- ※외부조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가를 받아야 하는 법인, 기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법인이 있다.
-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환재무제표
  - ㉥ 합병,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부채 명세서
  -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공제, 감면 신청서

(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 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 증자, 감자, 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주주명부

주식, 주권 및 주주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장부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할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 등이 기재된다.

### ① 제출 대상 법인

주식회사 등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 ② 제출 제외 법인

㉠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설립 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다만,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 대상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 전문회사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 ③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이 제외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지배주주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 관계자

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⑥ 주권상장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한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소액주주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 주주

#### ④ 제출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상속세 신고

#### (1) 상속세 신고의 의의

상속개시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속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정부는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즉, 상속세 신고행위는 상속세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는 협력의무이다.

#### (2) 신고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등이 납세의무자이다.

#### (3) 신고기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신고 시 첨부서류

- 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②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③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④ 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⑤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 ⑥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⑦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5)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바. 증여세 신고

#### (1) 신고의무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증여세 신고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추정되는 자에

제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 2826 판결).

## **(2)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하고 기한 내 미신고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3) 신고 시 첨부서류**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세액공제 관련 서류.

## **(4)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5)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